

「일학습병행 운영매뉴얼」 일부개정 주요내용

1. 개정사유

- 일학습병행 관련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함으로써 매뉴얼 내용 정확성 현장 활용성 제고
 - * (개정 근거) 일학습병행 운영규칙(‘23.1.1.), 운영규정(‘22.04.11.), 공동훈련센터 운영규칙(‘21.10.13.) 등
- 이전 매뉴얼 개정(‘20.11.20.) 이후 기타 공단 조직개편, 관할 구역 변경 등에 따른 부서 명칭, 연락처 등 수정
- 용어변경 및 상위규정 관련 조문수정

2. 주요 개정내용

□ <제1장> 사업개요

- (용어의 정의, 추진체계) 용어의 정의 및 기관별 역할 최신자료 반영(p11, p18)
 -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(RSC), 특화업종(특구) 지원센터, 공동훈련센터 지원단 등
 - * (개정사유)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27조제1항(‘22.04.11.),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5호
 - * (추가관련장) <제4장> 지원기관 2. 지원기관 운영체계

□ <제2장> 학습기업

- (관리체계도, 지정절차) 학습기업 지정절차 간소화 방안 적용(p26, p36)
 - 약정서 체결 및 지정서 송달 폐지
 - 지정서는 학습기업이 직접 인쇄하여 활용
 - ‘학습기업 지정’ 은 SNS를 통하여 알림(학습기업 신청시 SNS 수령 의무화)
 - 약정내용은 ‘학습기업 지정 통지서’ 뒷면에 주요한 내용만으로 요약하여 안내
 - * (개정사유) 일학습기획부-901(‘23.3.16.) 「일학습병행 학습기업 훈련 참여 간소화 방안」

- (지정절차) 사업수행계획서 전달자 동의 여부에 기업전담인력 양성교육 이수에 대한 내용 반영(p41)
 - (기업현장교사) 일학습병행과정 개발신청 전일까지 기본교육 1단계, 훈련 실시신고 전일까지 1명 이상 2단계 및 그 외 1단계
 - (HRD담당자) 훈련 실시신고 전일까지 1명 이상 2단계 및 그 외 1단계
 - * (개정사유) 일학습병행 운영규칙(23.1.1.) 제18조
 - * (추가관련장) <제6장>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2. 양성교육 개요
- (외부위원 역할 및 자격요건 등) 위촉배제 기준 추가(p55, p123)
 - 공단 내 타 사업에서 해촉, 영구 정지 등을 받은 경우 그 사업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외부위원 위촉배제 할 수 있음
 - * (개정사유) 일학습병행 운영규칙(23.1.1.) 제11조
 - * (추가관련장) <제8장> 훈련과정 인정 2. 훈련과정 인정 절차

□ <제4장> 지원기관

- (사업개요) 지원기관 운영현황 및 유형 최신자료 반영(p70)
 -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(RSC), 특화업종(특구) 지원센터, 공동훈련 센터 지원단 등
 - * (개정사유)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27조제1항(22.04.11.),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5호

□ <제5장> 학습근로자

- (기본사항) 외국국적자에 대한 훈련대상 확대(p74)
 - 규제 완화 및 고용보험 가입 대상 외국 국적자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기존 비자(재외동포(F4), 영주권자(F5), 결혼이민자(F6)) 이외에 거주권자(F2) 참여 허용
 - * (개정사유) 일학습병행 운영규칙(23.1.1.) 제13조

□ <제6장>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

- (양성교육 개요) 기업전담인력 교육 이수와 관련한 조항 정비(p83, p157)
 - 기업전담인력의 교육 이수 세부 기준 및 유예기준 등 마련

- 훈련과정 개발지침에서 규정된 개발진의 자격을 갖춘 기업현장교사를 포함하여 훈련과정 개발진 구성
- 기업현장교사, HRD담당자는 훈련실시신고 전까지 기업전담인력 교육 이수하고 미이수 시 반려 의무화
- 수당 지급 시 기업전담인력 교육 이수 여부 확인 의무화

* (개정사유) 일학습병행 운영규칙(23.1.1.) 별표6

* (추가관련장) <제9장> 훈련 운영 1. 훈련실시신고

○ (양성교육 커리큘럼) 기업현장교사 기본교육 개편(온라인 교육 비중 상향) 및 교육별 커리큘럼 개선사항 반영(pp.84~87)

- 업무공백 발생,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주 및 기업현장교사의 교육 이수에 대한 부담감에 대한 교육일 수 축소 등

* (개정사유) 일학습과정개발센터-4193(22.11.17.) 「기업현장교사 양성교육 기본과정 개편 확정 안내」

○ (양성교육 평가 및 이수기준) 기업현장교사 기본교육은 온라인 교육이 확대되면서 온라인 평가 신설, 대면 평가 축소(p89)

구분	1단계[온라인]	2단계[대면/실시간비대면]
기존	평가 없음	이해도평가(시험), 수행평가(과제)
변경(안)	이해도평가(시험)	수행평가(과제)

* (개정사유) 일학습과정개발센터-4193(22.11.17.) 「기업현장교사 양성교육 기본과정 개편 확정 안내」

□ <제7장> 훈련과정 및 학습도구 개발

○ (훈련과정 개발개요) 행정간소화를 위하여 별도로 진행되던 개발신청 승인과 개발진 승인을 통합하고 PDMS 전산 개선 반영(p95)

* (개정사유) 일학습과정개발센터-159(23.01.10), 「23년도 일학습병행과정 개발 심사 지원 기본계획 알림」

○ (직무추가 및 변경 개발절차) 기 지정 기업의 훈련 확대 절차 간소화(p97, p178)

- (종목추가) 단독기업에서 종목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현장 심사를 실시하고, 공동훈련센터형은 현장심사 생략
- (센터/유형/장소 추가) 공동훈련센터와 훈련유형 추가시 현장심사 생략, 훈련장소 추가는 소속기관의 판단하에 현장심사 실시

- (훈련 적정성 확보) 훈련 실시前과 훈련 실시中 2단계 안전 장치 유지
- * (개정사유) 일학습병행부-901('23.3.16.) 「일학습병행 학습기업 훈련 참여 간소화 방안」
- * (추가관련장) <제9장> 훈련운영 5.과정연계

□ <제8장> 훈련과정 인정

- (훈련과정인정절차) 심사위원요건 중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회피조항 추가(p123)
- * (개정사유) 일학습병행 운영규칙('23.1.1.) 제11조

□ <제9장> 훈련 운영

- (훈련변경신고) 운영절차 승인·신고사항 반영(p158)
- [별표2] 훈련실시신고 변경 세부내용

구분	세부사항
▶ 훈련계획 변경 불가사항	- 훈련내용 - 훈련방법(단, Off-JT 대면훈련→Off-JT 비대면 훈련 변경은 신고사항)(신설) - 훈련과정 명칭 - 훈련기간 - 훈련시간
▶ 훈련계획 변경 승인사항	<변경예정일 4일전까지> - 기업이나 사업장 외 교육훈련기관(공동훈련센터 포함)의 명칭·소재지(공동훈련센터 포함)의 명칭·소재지(관할 공단 지부·지사가 변경되는 경우)(신설) - 훈련장소 - 기업현장교사
▶ 훈련 운영 변경 신고사항	<변경예정일 전일까지> - HRD담당자 - 훈련시간표(기존 승인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변경) - 훈련방법(단, Off-JT 대면훈련→Off-JT 비대면 훈련 변경의 경우)(신설)

* (개정사유) 일학습병행 운영 규정('22.4.7.) 제9조제7항 및 [별표2]

□ <제10장> 내·외부 평가

- (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평가 절차) 행정안전부 정부24 서비스(www.gov.kr)와 공단 일학습병행 자격 포털(CQ-Net)간 서비스 연계 추진(p198)
- 일학습병행 자격증 발급 방법 추가(CQ-Net 또는 정부24 발급신청)
- * (개정사유) 일학습과정개발센터-3359('22.9.26), "일학습병행자격 정보「정부24」연계서비스 개시 완료 보고"

□ <제11장> 진단·컨설팅 및 모니터링

○ (개요) 모니터링(진단·컨설팅) 관련 정비(p216)

구분	세부사항
▶ 진단	훈련준비 또는 진행상황, 평가 등 전반적인 훈련 상황을 확인하여 미흡사항 도출
▶ 컨설팅	학습기업의 요청 또는 진단을 통해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개선을 유도하고 안내하는 활동
▶ 모니터링	진단 및 컨설팅을 통해 확인된 미흡 사항에 대해 개선활동을 실시 하였음에도 미흡사항이 동일·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, 부정·부실 훈련예방을 목적으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활동(지방고용노동관서 지도·점검 연계 전)

* (개정사유) 일학습병행부-1506('22.5.11.) 「일학습병행 훈련운영 및 진단·컨설팅 개선 계획 알림」

○ (학습기업 진단컨설팅 주체 및 방법) 주체별 진단컨설팅 실시 횟수 및 방법 현행화(p227)

* (개정사유) 일학습병행부-1506('22.5.11.) 「일학습병행 훈련운영 및 진단·컨설팅 개선 계획 알림」

* (추가관련장) <제11장> 진단·컨설팅 및 모니터링 5. 공동훈련센터 진단·컨설팅 주체 및 방법

○ (진단·컨설팅, 모니터링과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도점검 연계) 지도점검 연계 및 처리절차 반영(p235)

* (개정사유) 일학습병행 운영규칙('23.1.1.) 제34조, 제35조

□ <제12장> 훈련 지원

○ (훈련비, 일학습병행 훈련장려금) 1,000인 이상 대기업 대상 훈련비·훈련장려금 감액 지원기준 완화(p267, p272)

< [별표4] 일학습병행 훈련비 등 지원기준 >			
▶ 훈련비			
항목	기준	지원율	비고
기업	중소기업	-	
규모	대기업	-30%	상시 1,000인 이상 *단, 재학생단계 및 고속련 일학습병행 학습기업은 100% 지원
▶ 훈련장려금 : 상시근로자 1,000인 이상 기업은 지원하지 않음 - 단, 재학생단계, 고속련일학습병행 학습기업은 상시근로자 1,00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			

* (개정사유) 일학습병행 운영규정('22.4.7) 제35조

○ (Off-JT 훈련비(대학연계형)) 일학습병행 대학연계형 Off-JT 선지급 훈련비 업무처리 개선(p275)

- (신청방법 개선) 공문과 HRD-Net으로 이원화(공문만 발송했을 경우 훈련비 지급 불가)되어 있던 선지급 훈련비 신청방식을 HRD-Net으로 필요서류 첨부하여 신청하는 방법으로 업무처리 일원화 시킴

* (개정사유) 일학습기획부-4459(22.12.20.) 「인천지역본부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이행회신」

○ (행정사항) 행정처리 기간 기준 명확화(p32, p189, p297)

기준	처리기간
▶ 학습기업 지정 처리기간	접수일로부터 3주
▶ 훈련과정 개발신청 승인	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
▶ 훈련과정 중지·재개, 단축·연장 승인	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
▶ 훈련비 등 지급결정	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
▶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	해당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그 신청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재연장할 수 있음
▶ 처리기간 적용의 예외	부정훈련 의심 등의 사유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도점검을 의뢰했거나,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처리 기간의 예외로 처리
▶ 기간의 계산	토요일과 공휴일 산입에 대한 기준

* (개정사유) 일학습병행 운영규칙(23.1.1.) 제29조, 제30조, 제32조

* (추가관련장) <제2장> 학습기업 4. 지정절차, <제9장> 훈련 운영 6. 훈련 중도탈락 및 중지조치 등

○ (행정사항) 지원금 지급계좌에 대한 명시(p298)

- 반드시 “사업주 또는 법인(훈련기관) 명의의 계좌” 로 지급

○ (행정사항) 기업전담인력 수당 회수 기준 마련(p298)

- 일부 전담인력의 교육 미이수를 사유로 미이수한 전담인력에 해당하는 수당 회수

* (개정사유) 일학습병행 운영규칙(23.1.1.) 제26조

□ <제13장> 훈련 유형

- (재직자 일학습병행, 고교단계 일학습병행(산학일체형 도제학교), 전문대 재학생단계, P-TECH, IPP형 일학습병행) 공동훈련센터 운영현황 최신 자료 반영(p304, p315, p319, p324, p333)

- * (개정사유) 컨소시엄지원부-3584('22.12.29)「2022년 제11차 컨소시엄 일학습병행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알림」
- * (개정사유) 컨소시엄지원부-3584('22.12.29) 「2023년도 제2차 일학습병행-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」

○ (IPP형 일학습병행, 전문대 재학생단계) 기업직업훈련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기능이관(p68, p318, p332)

- (업무 이관)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운영하던 성과평가를 공단 (훈련품질관리국)으로 이관하면서 평가지표 등 별도 공지 예정

- * (개정사유) 고용부 기업훈련지원과('22.4.28.)「'22년 일학습병행 성과관리지원사업 기본계획(안) 승인」에 따른 직재개편 반영

○ (첨단산업 아카데미) 사업 개요 및 운영현황 반영(p331)

- * (개정사유) 일학습운영부-6193('22.10.21.) 「일학습병행 첨단산업 아카데미 운영계획(안) 마련」

□ 기타

○ 용어변경 및 현행법령 명칭 반영

-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, 공동훈련센터 지원단, 훈련과정개발센터, 직업능력연구원 등 적용

○ 상위규정 및 관련고시 조문수정

- 일학습병행 운영규정·규칙, 조달청 고시, 병무청 고시, 중소벤처기업부 공고, 근로기준법, 산업안전보건법 변경 내용 적용